

세부일정(안)

시간 일정	주요 내용	비고
13:00~13:10 (10분)	인사말씀	공단
13:10~14:00 (50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단 담당자
14:00~14:30 (30분)	질의응답 및 마무리	
14:30~14:40 (10분)	인사말씀	공단
14:40~15:30 (50분)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공단 담당자
15:30~16:00 (30분)	질의응답 및 마무리	

2020년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사업설명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Contents

1. 2020년 특성화시장 선정결과
2. 사업 개요
3. 사업관계자 역할
4. 사업추진절차 및 향후 일정
5. 기타사항
6. 가격표시제
7. 자주묻는 질문
8. 질의응답

1. 2020년 특성화시장 선정결과

(1) 문화관광형시장 (30곳)

광역시	기초	시장명	광역시	기초	시장명
서울	구로구	구로시장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의거리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서구	가좌시장
	성북구	정릉시장	대전	동구	신도꿈지락시장
	양천구	신월1동신영시장		서구	한민시장
부산	부산진구	평화시장	경남	김해시	삼방시장
	사상구	르네시떼		창원시	창동통합상가
	수영구	민락골목시장		창원시	명서시장
	해운대구	반송2동시장	경북	경주시	경주중앙시장
대구	달서구	서남신시장	전남	광양시	증마시장
광주	남구	무등시장		나주시	나주목사고을시장
경기	수원시	반딧불이 연무시장	전북	고창군	고창전통시장
	파주시	적성전통시장		무주군	무주반딧불시장
울산	중구	젊음의거리	충북	단양군	단양구경시장
강원	평창군	봉편전통시장		보은군	보은종합시장
충남	당진시	당진전통시장		충주시	옹달샘시장

(2)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30곳)

광역시	기초	시장명	광역시	기초	시장명
서울	중구	삼익패션타운	인천	남동구	구월도매전통시장
	관악구	관악신사시장		동구	현대시장
	성동구	금남시장		서구	인천축산물시장
부산	부산진구	당감새시장		서구	신거북시장
	연제구	연동골목시장	충북	음성군	음성전통시장
대구	달성군	화원시장		청주시	오창전통시장
광주	서구	양동경열로시장	충남	태안군	안면도수산물시장
	동구	금남지하도상가 1공구		공주시	유구시장
	광산구	월곡시장	전북	전주시	전북대상가
경기	안산시	한대앞역상점가	전남	순천시	순천씨내몰상가
	평택시	안중시장	경북	의성군	안계정기시장
	부천시	원미종합시장		문경시	문경전통시장
	시흥시	도일시장		경산시	경산시장
울산	남구	신정시장		포항시	대해종합시장
강원	인제군	원통시장	경남	진주시	진주자유시장

(3) 특성화 첫걸음 컨설팅 (20곳) → 접수 순

광역시	기초	시장명	광역시	기초	시장명
서울	동작구	남성역골목시장	경기	이천시	관고전통시장
	송파구	풍납시장		이천시	장호원전통시장
	송파구	문정동로데오상점가		안양시	관영시장
	종로구	통인시장	경북	군위군	군위전통시장
	중구	인현시장		영주시	풍기인삼홍삼상점가
부산	동래구	충렬상가시장	영주시	소백쇼핑몰	
	동래구	사직시장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
광주	서구	양동산업용품	강원	영월군	영월중앙시장(상점가)
	서구	화정동서부시장	충남	서천군	장항전통시장
경남	창원시	회성종합시장	제주	제주시	누웨마루상점가

2. 사업 개요

사업	목표	사업기간	지원금액★
희망사업 프로젝트 (지역선도형)	광역별 2개 이내로 지역 내 대표시장으로 육성	2년	20억원 이내 (국비,지방비 매칭) * 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른 지방비 비율 차별화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	해당시장만의 특화요소에 집중, 차별화 를 추진함으로써 명품 특화시장 으로 육성	2년	10억원 이내 (국비,지방비 매칭) * 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른 지방비 비율 차별화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5대 핵심과제 등 기본역량을 점검, 보완함으로써 향후 특성화사업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1)3대 서비스역량 ① 편리한 지불결제, ② 고객신뢰, ③ 위생·청결 2)2대 조직역량 ④ 상인조직 역량, ⑤ 시장 안전관리 ※ 기존 골목형시장 사업과는 별개(시설부문 일체 추진 불가)	1년 <i>* 성과에 따라 희망사업 프로젝트(문광형) 도약 시 2년 추가지원 가능</i>	3억원 이내 (국비,지방비 매칭) * 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른 지방비 비율 차별화
특성화 첫걸음 (컨설팅)	5대 핵심과제 개선을 위한 종합컨설팅 (향후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을 위한 기반)	6개월 이내	15백만원 이내 (전액 국비, 단 시장 직접지원 없음)

★ 지원금액은 시장 규모별 차등 지원

★ '20년도 시장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국비+지방비)

시장 구분		희망사업 프로젝트 (지역선도형)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관광형)	특성화첫걸음 (기반조성)
대형	500개 이상	1,000	500	300
중대형	300~499개	950	480	290
중형	100~299개	900	460	280
소형	50~99개	850	440	270
초소형	50개 미만	800	420	260

* 문화관광형 시장의 경우 '21년도 사업비는 '20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차등 지원

3. 사업관계자 역할

· 참여시장(상인회)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시장으로 선정된 시장

· 주요 역할

1. 사업 수행
2. 상인기획단 추천 및 운영
3. 사업추진협의회 참여, 사업단장 선정 심의·의결, 사업계획 수립 참여
4. 협약체결(지방청-공단-지자체-상인회-사업단)
5. 사업성과 및 결과물의 활용, 유지관리 및 감독협조, 사후관리 지원
6. 전문위원회 참여(해당시)
7. 각종 교육, 간담회, 설명회 등 사전 안내된 사항에 대한 참석
8. 기타 중기부 및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참여시장은 사업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단에 임의 요구, 지시, 강요할 수 없음

사업단장

지원 확정된 시장의 사업 총괄 책임자

주요 역할

1. 사업 총괄 및 추진
2. 사업단 구성 : 사업단 명의의 단체 설립 및 사업단원 채용
3. 사업단 운영 : 협약체결(지방청-공단-지자체-상인회-사업단), 사업비 관리 및 사업단 총괄
4. 사업추진협의회 개최 시 운영 지원 및 의결사항 반영
5. 사업 착수, 중간, 완료 보고 등 사업진행 관련 일체의 보고 및 성과보고(발표)
6. 사업 내용 및 성과에 대한 공유, 홍보 목적의 공청회, 간담회, 설명회 등 운영
7. 사업 결과물의 등록 및 지자체 인계, 결과물 유지관리, 성과활용 방안 마련
8. 사업결과물의 하자보수, 점검, 평가 등에 따른 협조 및 자료 제출
9. 각종 교육, 간담회, 설명회 등 사전 안내된 사항에 대한 참석
10. 기타 중기부 및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특성화시장의 추천, 사업비 분담, 사업 수행·지원·관리감독 등을 수행하는 기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주요 역할

1. 특성화시장 지정·육성 및 시장 선정을 위한 추천
2. 지방비 확보·부담, 공단 지정 계좌로 납부
3. 상인기획단 구성 및 관리
4.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업단장 선정 심의·의결 및 공단 통보
5. 사업계획 수립 지원, 계획서 최종 제출 전 검수(상인회, 상인기획단 합동)
6. 협약체결(지방청-공단-지자체-상인회-사업단)
7. 각종 교육, 회의 등 사전 안내된 사항에 대한 참석
8.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원으로 사업추진간 심의·의결
9. 사업비 집행·공사 및 용역의 발주·계약과 인허가 관련한 관리감독 및 감리
10. 문제시장에 대한 현장조사 등
11. 사업 기자재, 시설물의 감리, 검수, 활용, 관리 및 사업진행, 업무지원 등
12. 사업성과 및 유무형 결과물 일체의 인수, 지속 성과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13. 기타 중기부 및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자체는 사업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단에 임의 요구, 지시, 강요할 수 없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본부)

소상공인·전통시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기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주요 역할

1.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운영세칙 및 지침 제·개정, 국회 요구자료 등 대응
2. 사업 신청요건 등에 대한 검토·확인, 평가
3. 상권육성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전문가 POOL 운영 및 관리, 추천
4. 사업단장 및 수행기관 위탁계약 체결, 사업단 운영지원
5. 사업비 교부 및 집행관리, 정산, 사업성과 평가 총괄
6. 사업성과 제고·공유·확산을 위한 홍보, 마케팅, 설명회, 성과발표회, 워크숍 등 공동사업 운영
7. 사업 진행관리 및 점검, 문제사항 및 전문위원회 결과 후속 조치
8. 사업 결과물(유·무형) 활용촉진 및 사후관리 등급제 운영
9. 기타 중기부 및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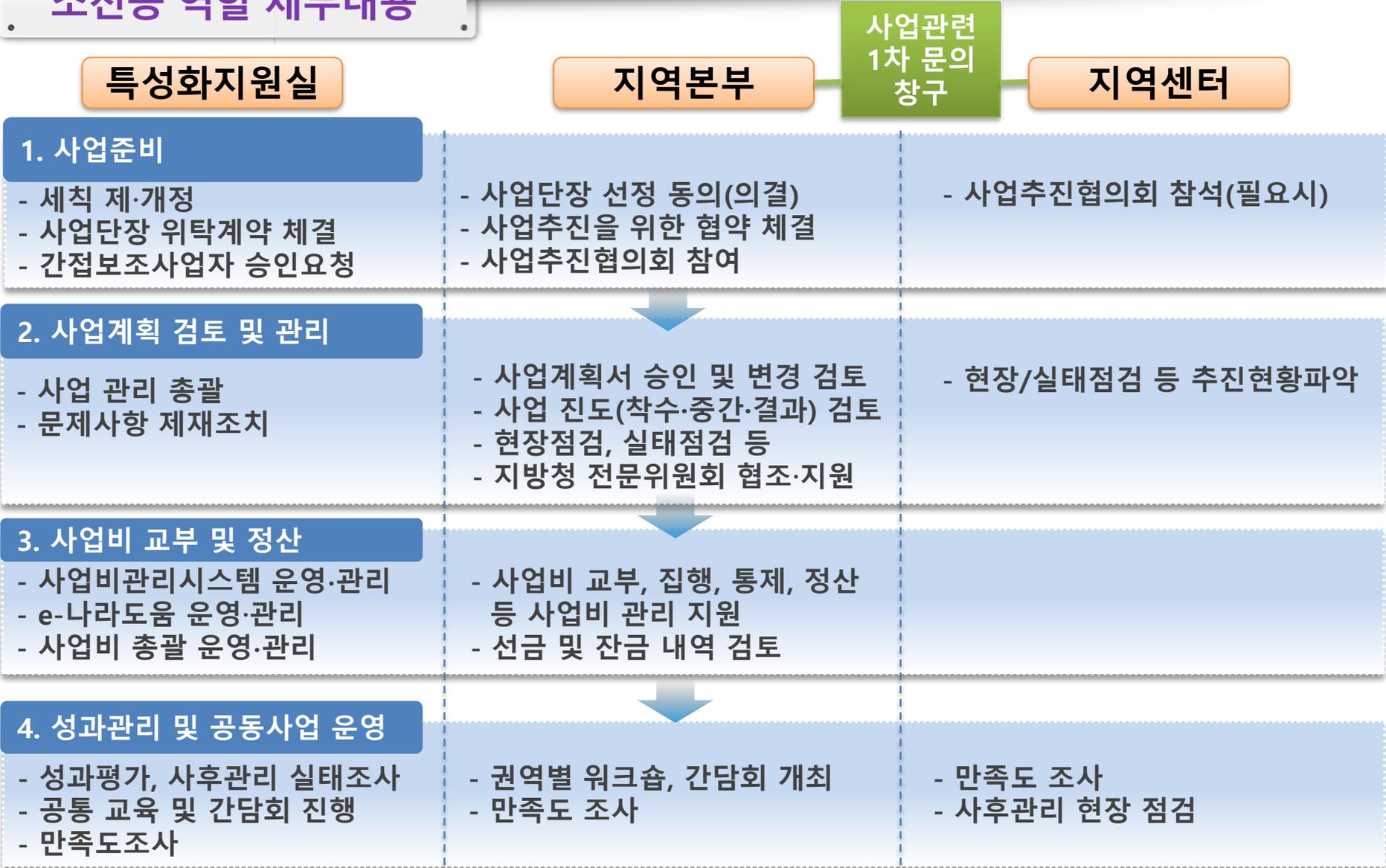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본부 및 센터)

소상공인·전통시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기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주요 역할

1. 사업추진협의회 참여, 사업단장 선정 심의·의결
2. 사업별 계획 및 세부사업 검토, 확인
3. 사업별 사업비 교부 및 집행관리, 정산
4. 사업별 실태조사 및 점검
5. 협약체결(지방청-공단-지자체-상인회-사업단)
6. 사업별 협약체결 관리, 진행관리 및 경미한 사안에 대한 제재조치
7. 기타 중기부 및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진공 역할 세부내용



중소벤처기업부(본부)

사업 신청의 접수, 신규시장 선정을 위한 평가, 참여시장 사업계획 검토, 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감독 등을 수행하는 정부기관

주요 역할

1. 관련 법령 및 지침, 세칙 등 정비
2. 예산확보 및 보조금 교부 결정
3. 사업별 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4. 사업 공고 및 지원시장 선정
5. 사업별 간접보조사업자 지정
6. 심의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성과 분석·평가 및 제도개선
8. 기타 특성화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지방청)

사업 신청의 접수, 신규시장 선정을 위한 평가, 참여시장 사업계획 검토, 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감독 등을 수행하는 정부기관

주요 역할

1. 사업별 수요조사 실시 및 사업계획 발굴
2. 사업 신청의 접수 및 검토, 지원시장 선정을 위한 평가
3. 사업추진협의회 참여
4. 시장별 사업단장 선정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및 승인
5. 협약체결(지방청-공단-지자체-상인회-사업단)
6.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검토 및 승인
7.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감독
8.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 진행관리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사업추진절차 및 향후 일정

① 사업준비

- 지방비 확보 및 납부
- 상인기획단,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사업단장 선정, 사업단 설립
- 사업단 간접보조사업자 지정
- 사업 계획 수립 및 지방청 승인, 협약체결

② 사업착수

- 시장별 진도보고(착수, 중간 등)
- 상인 대상 공청회
- (사업단) 사업비 신청 및 교부

④ 사업완료

- 완료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시장 및 사업단 성과평가
- (특성화 첫걸음) 문광형 사업 도약준비
- 사후관리 및 성과유지

③ 성과확산

-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 진도보고 및 만족도조사
- 간담회, 워크숍, 수시/중간보고 등
-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① 사업준비

② 사업착수

③ 성과확산

④ 사업완료

• 지방비 확보 및 납부

- 이미 후보시장 가내시 통보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금액을 '20년 1월내 공단에서 안내하는 지방비 전용계좌로 납부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후보시장 선정결과 및 가내시 통보」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1051, 2019)
- 만약 지방비 확보가 안되어 있다면 사전에 공단 안내 후 추경으로 지방비 확보 필요
 - * 기타 지자체별 지방비 납부방법, 일정 등 세부 사항은 공단에서 공문으로 재안내

① 사업준비

② 사업착수

③ 성과확산

④ 사업완료

• 상인기획단 구성 및 운영

(목적) 상인회의 사업 참여를 통해 사업지원 이후의 시장 자생력 강화

(구성 및 운영 주체) 지자체, 상인회

-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인 및 실무자 5명 이내

(연합시장 8명 이내, 상인 3명 이상 필요)

1. 상인회장(당연직, 연합시장은 시장 당 1인으로 최대 3인)
2. 해당시장에서 3년 이상 점포를 운영 중인 상인청년상인 1명, 기존상인 2명 권장)
3. 시장 매니저(필요시)
4. 해당 시장 상인회에서 6개월 이상 근무경험자 중 사업종료 후 계속 근무 가능 자

① 사업준비

② 사업착수

③ 성과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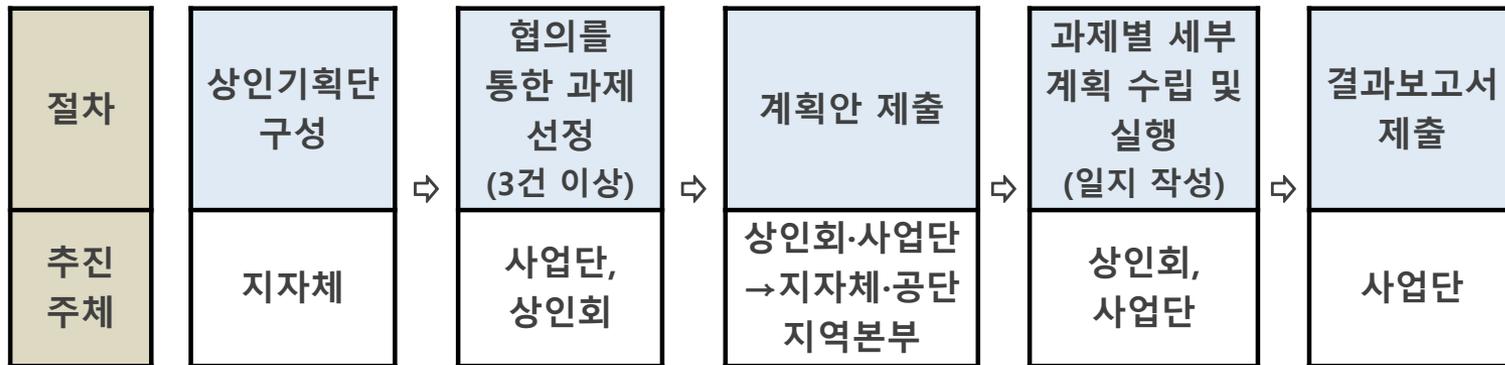
④ 사업완료

• 상인기획단 구성 및 운영

(운영) 시장별 3개 이상 과제*를 선정하여 기획, 실무 참여 기회 제공

* (예시) PB상품 개발·판촉, 협동조합 설립·운영, 공동마케팅, 공연·이벤트 등

<운영절차>



(역할) ① 사업계획 수립 시 자문 및 의견제시, ② 사업추진 전후 의견수렴 및 성과 모니터링, ③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성과제고를 위한 상인회, 지자체 협력 및 자문 등

① 사업준비

② 사업착수

③ 성과확산

④ 사업완료

•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목적)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청, 지자체, 공단 지역본부(센터), 참여시장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주체) 지원시장별 기초지자체

-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지자체 실무 담당자가 대행 가능

1. 참여시장 상인회 대표(당연직, 연합시장은 시장 당 1인으로하되 최대 3인)
2. 지방청 담당자(당연직)
3. 공단 지역본부(지역센터) 담당자(당연직)
4. 광역지자체 담당자(필요시)
5. 참여시장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분야 전문성이 높은 자(필요시 2인 이내)
6. 참여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대표성을 가진 지역 내 소비자(필요시 1인 이내)

★ 당연직 외 위원은 타 특성화시장의 사업단장 및 단원이 아닌자로서 사업관계자 간 추천 및 합의를 통해 위촉해야 함

① 사업준비

② 사업착수

③ 성과확산

④ 사업완료

•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위원 임기) 구성된 날로부터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구성원 변경) 구성원의 전보, 퇴사, 교체 등 중도변경 사유 발생 시 구성원은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지자체는 즉시 세부변경사항을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원 전원과 공단에 통보

(운영 기간) 각 협의회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착수/중간/결과 보고 등은 필수

* 사업추진협의회 위원 소집,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외부위원 수당 지급 등 업무 처리
→ 사업단 역할

① 사업준비

② 사업착수

③ 성과확산

④ 사업완료

•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의결사항)

1. 사업단장 선정 심의 및 사업단장 부재 시 직무대행자 지정 심의·의결
2. 사업단 채용인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3. 사업계획안 논의 및 검토, 최종안 심의·의결, 변경계획에 대한 검토 및 심의
4. 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점검 및 논의
5.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및 갈등, 분쟁 등의 적극 조정
6. 사업 결과보고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심의·의결
7. 기타 중기부 및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의결) 위원 정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 및 참석위원의 2/3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의결된 것으로 하며 서면 동의의 경우도 동일

-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심의·의결 가능, 단, 사전에 대리인 참석 여부와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① 사업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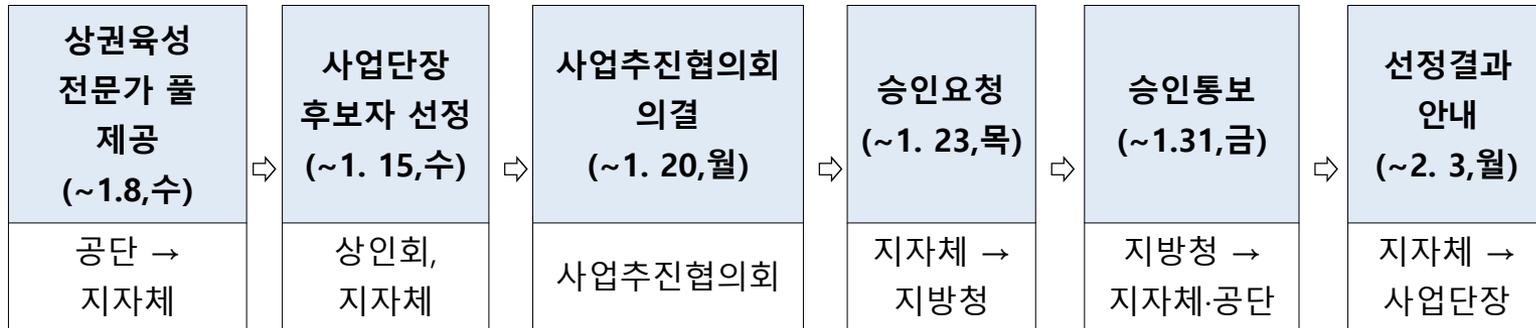
② 사업착수

③ 성과확산

④ 사업완료

• 사업단장 선정

<선정 절차>



1. 공단에서 상권육성 전문인력 양성과정 이수자 POOL 권역별 제공(총 197명)
2. 지자체는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 해당 시장 사업추진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 선정
- 후보자 선정을 위한 절차(서면검토, 면접 등)는 자율
3. 지자체가 직접 해당 후보자에게 섭외를 시도하여 후보자가 수락하면 사업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청에 승인 요청
4. 공단은 최종 선정된 사업단장과 신규 용역계약 체결

① 사업준비

② 사업착수

③ 성과확산

④ 사업완료

• 사업단장 용역비 책정기준

(단위 : 원/월)

사업 구분	용역비 지급기준	용역비 월간한도(최대)		기타
		참여율	용역비	
·희망사업 프로젝트 ·첫걸음 기반조성	·용역 참여율에 따라 차등 지급	100%	4,779,7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율은 사업관계자와 사전 협의 후 단장이 자율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률에 따른 용역비로 위탁계약 체결 · '19년도 용역비 기준으로, '20년도 용역비 지급기준 변경가능
		80%	3,823,802	

< 사업단장 용역비 지급기준 일반 >

◆ 산출근거 : 전문원가계산기관의 용역비 원가산출기준에 따름

* **상기 용역비에는 개인 및 사용자 부담 2대 보험료(건강보험, 연금보험)가 포함된 금액이며, 보험 가입은 관련기관의 법령 및 지침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함**

◆ **사업단장은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

① 사업준비

② 사업착수

③ 성과확산

④ 사업완료

• 사업단장 계약해지

1. 사업단장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사업단장 개인 사유로 1개월 이상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지방청 및 공단이 판단하는 경우
2. 사업단장이 국가 계약법,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및 세칙 등의 지침을 위반하여 전문위원회로부터 계약해지 수준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3. 사업목적에 위배되거나 당초 승인 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사업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시설·공사, 용역, 물품 등의 거래 등에 있어 사업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거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또는 영리목적으로 외부에 유출 또는 사용한 경우
5. 사업관계자 간 분쟁, 갈등 등으로 정상적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중기부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6. 공단이 실시하는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득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자료 요구 및 지정 교육에 불응하거나, 이에 대한 시정요구에 불응하여 개선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도덕성의 심각한 훼손 등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기타 중기부 장관 및 공단 이사장이 사업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사업준비

② 사업착수

③ 성과확산

④ 사업완료

• 사업단장 계약해지

(계약해지 관련 기타사항)

- 사업단장 귀책사유 또는 개인사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당초 지급된 용역비의 환수(전부 또는 일부)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 잔여기간이 10개월 미만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 사업단장 선임이 어려울 경우, 사업관계자간 상호 협의하여 사업단원 중 1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 할 수 있음(직무대행수당 有)
- 사업단장과의 계약 해지 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사업단장으로 대표자를 변경하여 기존 사업 인계, 운영할 수 있음
- 사업단장은 개인 사유로 계약해지가 필요한 경우, 계약 해지 희망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 까지 해지사유가 포함된 해지신청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① 사업준비

② 사업착수

③ 성과확산

④ 사업완료

• 사업단장 변경

- 사업단장과의 계약 해지 등의 경우 사업단장 변경 가능
- 사업단장 변경시 기존 사업단장은 신규 사업단장에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협조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중의 용역비는 양측 단장 모두에게 지급하되, 인수인계 기간은 최대 1개월

① 사업준비

② 사업착수

③ 성과확산

④ 사업완료

• 사업단 구성 및 협약체결

• 사업단 구성

- (사업단 구성) 사업단장은 특성화사업 사업단 명의를 단체를 설립하고, 중기부로부터 간접보조사업자 지정을 받아 사업단 운영, 사업 추진
- (단원 구성) 사업단장은 외부 공모를 통해 자격을 갖춘 자를 단원으로 선발하고 근로 계약 체결. 단, 1차 공고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 요건을 완화하여 재공고 가능
 - 단원 채용 등 사업단 구성과 관련한 내용은 '19년도 세칙 제20조(사업단 구성)와 제21조(사업단 운영)에 따라 처리하며 단원과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

• 간접보조사업자 지정



- 간접보조사업자 지정 승인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공단은 사업단장과 위탁계약 체결

① 사업준비

② 사업착수

③ 성과확산

④ 사업완료

• 사업단원 인건비 지급기준

연차	경력 기준	한도 금액(원)	연차	경력 기준	한도 금액(원)
13	만 12년 이상	3,814,027	6	만 5년 이상	2,397,052
12	만 11년 이상	3,569,181	5	만 4년 이상	2,243,171
11	만 10년 이상	3,340,054	4	만 3년 이상	2,099,168
10	만 9년 이상	3,125,635	3	만 2년 이상	1,964,410
9	만 8년 이상	2,924,981	2	만 1년 이상	1,838,302
8	만 7년 이상	2,737,209	1		1,745,150
7	만 6년 이상	2,561,490	* 상기의 표는 '19년 기준입니다.		

< 사업단원 보수 지급기준 일반 >

- ◆ 산출기준 : 전문원가계산기관의 인건비 원가산출기준에 따름
- ◆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을 위해 간접사업비 한도 내에서 실무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월 보수총액 및 세부항목은 상기기준을 참고하여 책정하되, 피고용인과 합의한 경우, 한도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 상기 기준은 통상적 수당(연장근로 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임
- ◆ 사업단원의 퇴직급여충당금, 4대 보험료(사용자 부담분)는 상기 보수와 별개로 편성하여 적립 가능
- ◆ 사업단장의 부재로 인해 사업단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할 경우, 이에 따른 직무대행수당 30만원(월 기준) 추가지급 가능

*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에서 자체 소급하여 지급 가능(공단에서 별도 안내)

① 사업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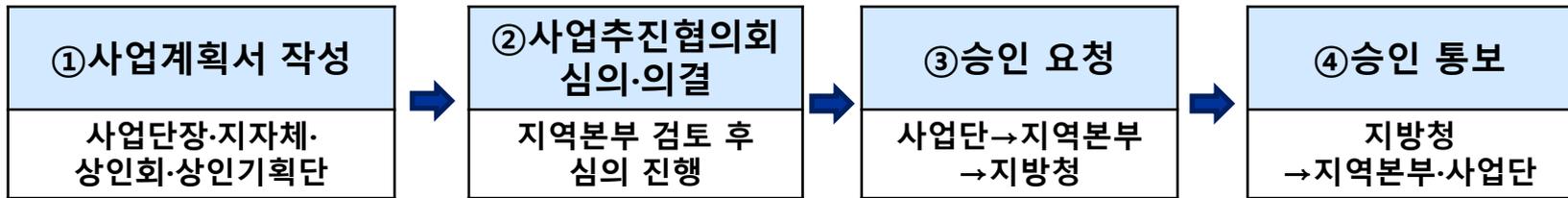
② 사업착수

③ 성과확산

④ 사업완료

• 사업계획 수립, 승인

사업계획서 승인 절차



- ① 사업단장 위탁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참여시장에서 최초 신청한 사업 계획을 토대로 지자체, 상인회, 상인기획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 수립
→ 공단 지역본부에 서면으로 사전검토 요청 → 지역본부 검토, 7영업일 이내 회신
- ② 사업단은 검토 의견을 반영·수정하여 지자체에 심의 요청 → 지자체 7영업일 이내 사업추진협의회 개최
- ③ 사업단은 사업추진협의회 의결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청에 최종 승인요청
- ④ 지방청은 승인요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공단과 사업단에 통보

① 사업준비

② 사업착수

③ 성과확산

④ 사업완료

• 사업계획 수립, 승인

· 희망사업 프로젝트(지역선도형)

(목적) 지역 대표시장 및 특성화 성과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거점이자 전통시장의 롤모델로 육성

(지원규모) 총 2곳(신규 1, 계속 1)

(사업내용)

-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역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협업사업 추진 등 지역 거점시장으로서 위상 정립
- (특화콘텐츠 육성) 한류 트렌드와 외국인 취향을 반영한 특화 상품 및 전통문화 체험 콘텐츠 개발 등 전통시장 특화요소 육성
- (관광객 유입촉진) 시장 특화요소 접목 관광상품 개발 및 프로모션 운영, 쇼핑·관광 환경 개선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입 확대
- (자생력 강화) 상인 주도의 아이디어 중심 사업계획 수립, 특화요소 발굴 및 고도화, 수익모델 발굴 등 상인 자생력 강화 집중 지원
- (5대 핵심과제) 결제편의, 가격 및 원산지표시, 친절 및 청결개선, 조직강화,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 등 5대 핵심과제 추진

① 사업준비

② 사업착수

③ 성과확산

④ 사업완료

• 사업계획 수립, 승인

· 희망사업 프로젝트(문화관광형)

(목적)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징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 프로젝트 지원

(지원규모) 총 30곳 예정(신규)

(사업내용)

- (문화접목 콘텐츠 개발) 지역특색(문화, 관광, 역사)과 연계한 투어 코스, 체험, 축제 등 문화 콘텐츠 개발
- (대표상품 개발) 시장의 대표상품을 개발, 또는 개발 완료된 대표 상품의 홍보, 마케팅, 판매증대를 위한 특화사업
- (디자인 접목) 시장 고유의 테마를 발굴하여 노후된 시설, 공용 공간 등의 활용도 제고 및 고객만족도 증대를 위한 디자인 재생
- (5대 핵심과제) 결제편의, 가격 및 원산지표시, 친절 및 청결개선, 조직강화,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 등 5대 핵심과제 추진

① 사업준비

② 사업착수

③ 성과확산

④ 사업완료

• 사업계획 수립, 승인

•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목적) 3대 서비스 혁신과 2대 역량강화를 통해 근본적 경쟁력을 갖추고 상인회 주도의 특성화사업을 위한 사전 추진기반 구축

(지원규모) 총 30곳

(사업내용)

- (3대 서비스 혁신) 결제편의, 가격 및 원산지표시, 고객선 준수, 친절 및 청결개선, 온누리 가맹점 확대 등을 위한 일련의 지원
- (2대 역량강화) 상인조직 강화(가입률 및 상인회비 증액), 안전한 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일련의 지원
- (문광형시장 도약 준비) 차년도 문광형 사업추진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 사전 수립
- (시장 홍보) 5대 혁신과제 관련 시장의 변화된 모습 홍보 추진 및 고객 소통 강화

① 사업준비

② 사업착수

③ 성과확산

④ 사업완료

•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편성불가 ★

1. 시설현대화 사업과 중복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흥·사행성 사업
2. 시장상인 및 건물주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지 않은 사업
3. 개별점포 직접지원 또는 개인의 직접적 수익취득이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4. 단기, 일회성 사업으로 중장기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
5. 기타 특성화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 사업 신청 시 및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제출한 최초 사업계획서 내용과 선정된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당시의 사업계획과 현저한 차이가나는 내용

* 지방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간접비) 각 사업연도 사업비 총액에 대해 지역선도형 20%, 문화관광형 35%,
첫걸음사업 40% 이내로 편성

① 사업준비

② 사업착수

③ 성과확산

④ 사업완료

• 사업비 교부 및 집행

(준비금) 사업단은 간접보조사업자 지정 이후 준비금 최대 3천만원 한도 내 신청 가능

* 다년도 사업은 연차별 사업기간 시작일부터 신청 가능

(사업비 교부)

- 지방청 사업계획 승인 이후 공단 지역본부에 사업비 신청 가능
 - 사업비는 선금과 잔금으로 분할 신청
 - (선금) 총 사업비의 70% 이내 신청
 - (잔금) 선금의 80% 이상 집행한 경우에 신청 가능, 단, 사업비 집행률이 낮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단 지역본부와 사전 협의하여 교부 가능
- * 잔금은 사업실적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검사(검수)한 후 지급 가능

① 사업준비

② 사업착수

③ 성과확산

④ 사업완료

• 사업비 교부 및 집행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보조금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준수하여 집행, 관리
- 사업단은 공단이 정한 금융기관의 사업비 관리계좌 및 사업비 카드를 개설해야 하고, **지정된 계좌 및 카드로만 사업비 집행 가능**(그 외 집행시 환수 및 제재 가능)
- **개인의 자본형성 또는 사유재산 가치 증대, 시설현대화사업과 차별성 없는 기반설비, 사적용도 등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불가**
- 5천만원 이상 조달공고 건으로 용역업체 선정 시, 외부전문가가 과반 이상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선정위원회 개최 필수. 또한 여성 전문가 30% 이상 필수 포함(공단이 제공한 POOL에서만 활용해야 함)
 - 기반시설 또는 5천만원 이상(VAT 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추진 이전에 공단이 정한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의뢰
 - 원가계산 기관 정보, 상세 절차 등은 추후 사업단장에게 별도 안내

① 사업준비

② 사업착수

③ 성과확산

④ 사업완료

• 사업비 교부 절차

◆ 사업비는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서만 교부 → 집행 → 정산

사업비 교부: (국비) e-나라도움(www.gosim.go.kr) (지방비) 공단 인트라넷

→ 교부된 사업비는 신한사업비관리시스템(http://sijang.semas.kr) 통제 후 집행



e-나라도움



신한사업비관리시스템

※ 시스템 활용 관련하여 별도 교육 실시 예정

① 사업준비

② 사업착수

③ 성과확산

④ 사업완료

• 사업비 교부 절차 (세부)

시장 별 배정예산 중

간접사업비 **3천만원** 이내로 신청

선금 80% 이상 소진 시 신청가능

준비금 신청

선금 교부

잔금교부

사업계획승인 후 선금신청 가능

선금은 **사업준비금 포함 70%까지** 신청가능

- 사업단은 신청공문양식 활용하여 지역본부 공문제출
- 지역본부 적정 통보 후 국비는 e나라도움으로 교부신청, 지방비는 사업비 신청 공문내용으로 같음

① 사업준비

② 사업착수

③ 성과확산

④ 사업완료

• 진도보고

(사업 진도보고회) 사업단은 아래와 같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도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① (착수)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한 공개 설명회 개최
- ② (중간) 중간시점에 프로젝트 진척내용 및 각종 현안사항 안내
- ③ (완료) 최종 완료된 프로젝트에 대해 안내
- ④ (주·월간보고) 매주 및 매월 신한사업비관리시스템에 주·월간보고 등록(상세 재안내 예정)

(공청회) 사업계획 변경 추진 시 단위사업비가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 또는 단위사업비의 총 50%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상인동의를 받아야 함

- ① 소형시장(영업점포 100개 미만) : 기존상인의 50% 이상
- ② 중형시장(영업점포 100~500개 미만) : 기존상인의 30% 이상
- ③ 중대형시장(영업점포수 500개 이상) : 임원의 90% 이상

① 사업준비

② 사업착수

③ 성과확산

④ 사업완료

• 사업계획 변경

◆ 지방청 승인 사업계획서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추진협의회 심의·의결 후 지방청 변경승인 요청

- ① 세부사업이 추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 ② 단위사업간의 예산 증감이 있는 경우
- ③ 세부사업간 예산 증감 포함 총 1,000만원 이상 예산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④ 사업목표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⑤ 당해연도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 ⑤ 기타 증기부 및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주의사항) 직접사업비를 간접사업비(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운영비)로 변경할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 없이 사업추진협의회 심의·의결 후 지방청 변경승인 필수

① 사업준비

② 사업착수

③ 성과확산

④ 사업완료

• 사업결과보고

(사업결과보고) 연차별 사업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2부, 요약본 1부 제출

- 다년도 사업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차별 보고서 外 전체 사업기간에 대한 총괄보고서 2부, 요약본 1부 제출
- 제출시 아래 문서 필수 첨부

1. 사업 유무형 결과물의 지자체 인수인계 확인서 및 하자보수이행증권 일체
2. 사업 유무형 결과물의 감리, 검수, 준공 등 사업결과에 대한 객관적 증빙 자료

-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 할 경우 사유 조사 후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사안의 경중에 따른 사업비 환수, 사업 참여 시 감점 또는 참여 배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

① 사업준비

② 사업착수

③ 성과확산

④ 사업완료

• 사업비 정산 및 전담인력 운영

- **(사업비 정산)** 사업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이 지정한 회계사무소를 통해 사업비 사용내역과 증빙자료 제출

* 정산 기준 : e나라도움과 사업비관리시스템 집행내역

- 사업단장은 회계감사 종료 이후 e나라도움 정산보고서 작성, 정보공시 등 정산관련 일체 업무 처리 필수

- **(잔액 반납)** 정산 결과에 따른 잔액, 불인정 금액, 발생이자, 기타 수익 등 공단에 전액 반납

- **(전담인력)** 협약기간 만료 이후 회계감사 및 정산, 사업비 확정·반납, 사업 인수인계 등 대응을 위한 사업단 인원 1명을 사후 관리 전담인력으로 활용 가능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정산결과

(단위 : 원)

사업명	2018년 특성화첫걸음시장 육성사업(기반조성)			
사업수행기관			사업책임자	
총사업기간	2018년 8월 6일 부터 2019년 3월 30일 까지		정산기간	2018년 8월 6일 부터 2019년 3월 30일 까지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 비 (A)	지방비 (B)	총사업비 (C = A + B)		
135,000,000	135,000,000	270,000,000		
수행기관 집행결과				
사용금액 (D)	사용잔액 (E=C-D)	발생이자 및 해지이자 (F)		
245,014,965	24,985,035	14,338		
불인정금액 (G)	기타 (주1) (H)	정산잔액(환수대상) (I=E+F+G+H)		
79,800	286,770	25,365,943		
(주1) 기타내역	기 집행비용 환급	수익사업 수입금	미확인입금액	합계
	286,770	0	0	286,770
검토의견	상기 불인정 금액을 제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함.			

① 사업준비

② 사업착수

③ 성과확산

④ 사업완료

•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 성과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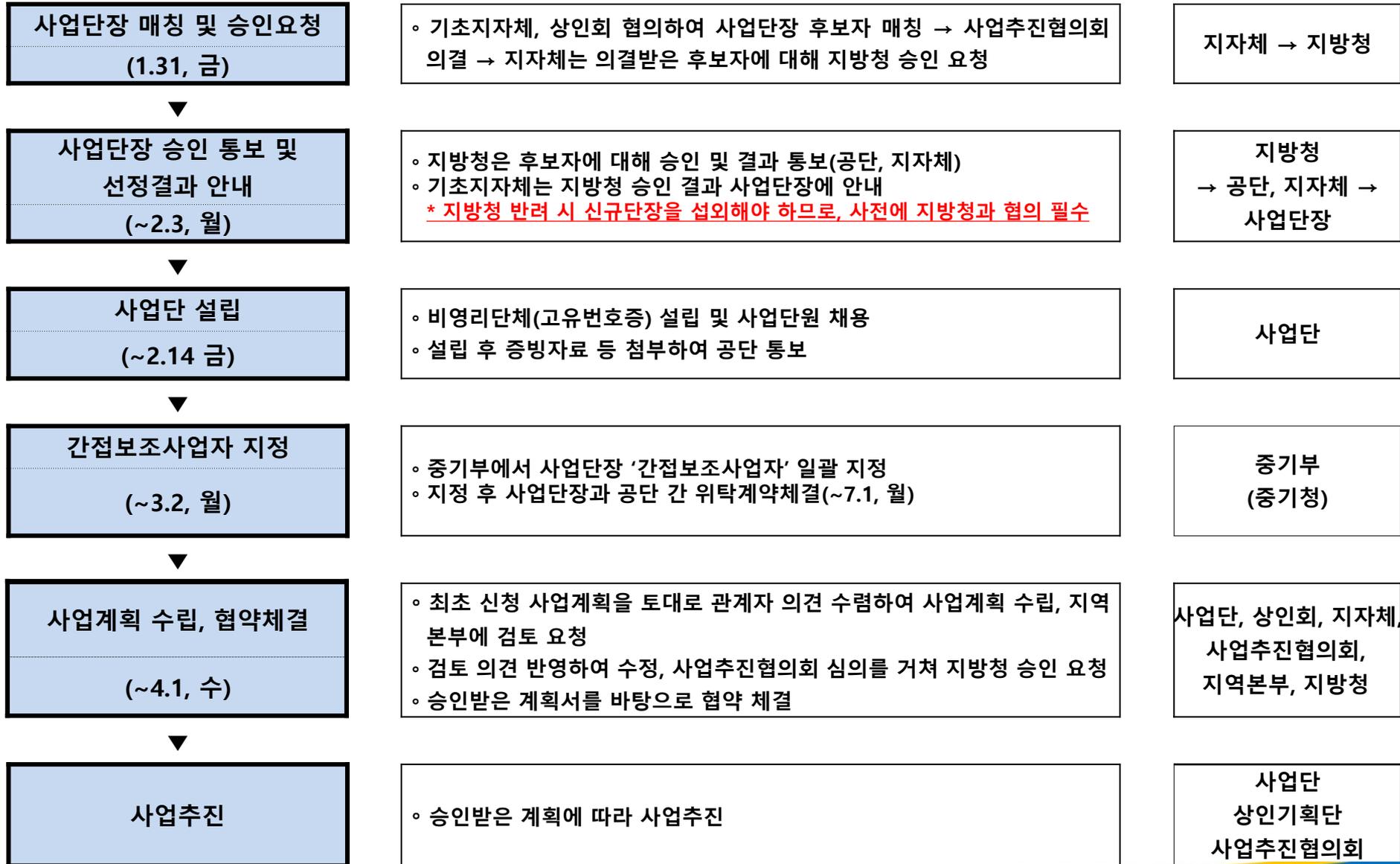
- 사업기간 내 사업 미완료, 평가 서류 등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원칙적으로 평가에서 제외(최하위 등급 부여)하고 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 가능
- 성과평가에 대한 세부사항(평가절차, 포상, 인센티브 등)은 중기부와 공단이 협의하여 운영하며, 상세사항은 추후 재안내
-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은 사업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문광형으로 연속지원 받을 수 있음

* 단, 도약 규모, 예산, 시장별 성과 수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후관리

- 사업완료 시장에 대하여 2년간 사업성과 및 결과물에 대한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등급(S,A,B,C,D,F)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우대 조치 가능

4-2. 향후 일정



5. 기타사항

• '20년도 통합세칙 및 매뉴얼 배포

◆ '20년도 통합세칙 및 사업운영 매뉴얼을 '20.1월 안으로 배포할 예정

- 그 전까지는 '19년도 세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세칙 개정일자 기준으로 '20년도 세칙 적용
- 사업단장 및 사업단원 인건비도 '19년도 세칙 기준으로 우선 지급하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세칙 배포 이후 소급하여 지급

• 사업단장 및 단원 실무교육

◆ 사업단장 최종 매칭 후, 단장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 교육 추진 예정

- 시기 및 장소 : 2월 중순 이후, 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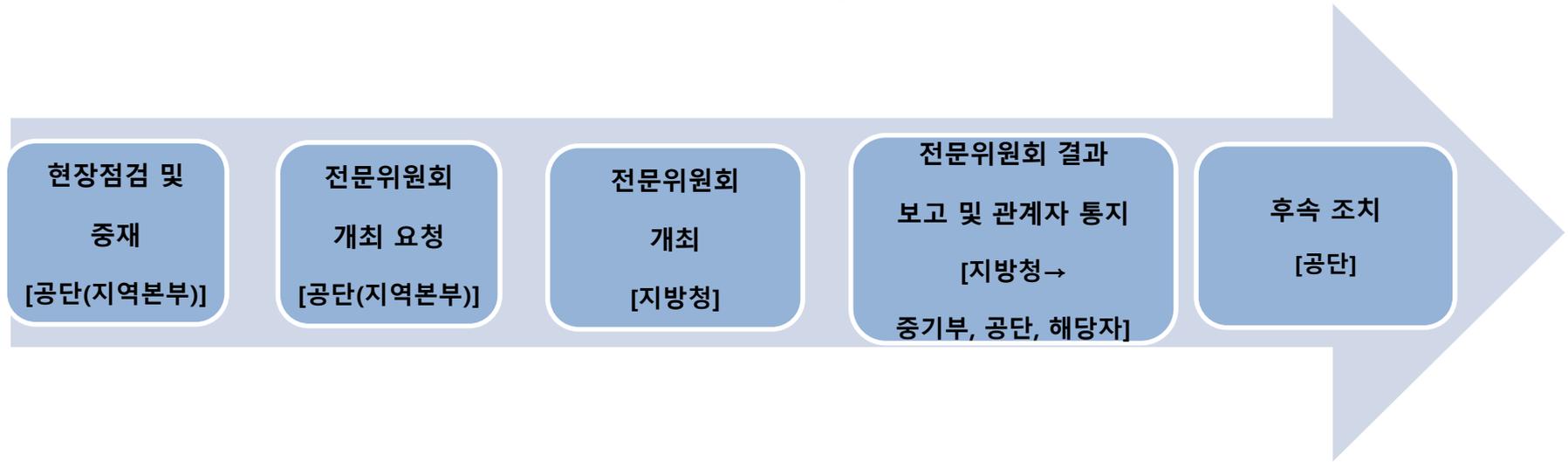
- 교육 내용 : e나라도움, 신한사업비관리시스템, 조달계약, 수의계약, 청탁금지법, 보조금법, 사업단 운영 및 관리방안, 사업비 정산, 공문서 작성 기획방법, 홍보/마케팅 등

◆ 사업단원의 경우, 추후 순차적으로 역량강화 교육 추진 예정

• 문제시장 및 사업단 관리

• 문제시장 및 사업단

- ◆ 참여시장 선정 후 중기부장관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시장 및 사업단
 - 문제시장에 대해 현장점검-전문위원회 개최 가능
 - 전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제한, 고소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청, 공단(지역본부)가 직권으로 주의·경고 등 제재조치 가능



• 주요 제재 및 처벌 사례

사례1

- (내용) 00시장 사업단장 상인회와의 갈등, 사업단원 부당해고, 폭행사건 연루
- (제재조치) 운영세칙 제39조(제재), 제20조(사업단장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
사업단장 제재(사업 참여제한 1년), 위탁계약 해지

사례2

- (내용) 00시장 사업단장 사업단원 인건비 27백만원, 집기비품 렌탈료 30천만원 횡령
- (제재조치) 운영세칙 별표6 '제재사항 및 조치', 보조금법 41조에 의거
부정지급된 57백만원 전액 환수, 사업참여 영구제한, 형사고발(진행 중)

사례3

- (내용) 00시장 문서위조로 사업비 부당수령, 상인회장이 업체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함
- (제재조치) **관련사업비 환수(27,백만원), 사업단장 사업참여제한(영구), 참여시장 및 상인회 사업참여제한(2년), 상인회장 사업참여제한(영구), 형사입건**

• 주요 제재 및 처벌 사례

사례4

- (내용) 00시장 상인회 및 대행사가 사업추진 간 명절이벤트 경품행사 수령증 허위작성 및 제출
- (제재조치) 사업참여제한 1년 및 경품구매금액 환수, 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상인회장 벌금형

사례5

- (내용) 00시장 사업 추진 간 정산서류 허위 제출, 사업비 과다 계상
- (제재조치) 사업단장 계약해지 및 사업참여제한(1년), 관련 사업비 환수(12백만원)

사례6

- (내용) 00시장 사업단은 해당시장 사업단원이 소속된 업체와 특수관계자 거래
- (제재조치) 사업단이 해당 업체와 거래한 금액 전액(7.8백만원) 환수, 사업단장 사업참여 제한 2년

• 사업추진 시 부정당 행위 제재조치

- ◆ 전년대비 사업추진 시 부정당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예정
 - 사업비 환수가 확정될 경우, 사업참여제한(특성화/시장경영혁신/공단) 필수
 - 단, 환수금액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 설정 예정(6개월~영구 등)
 - 단. 사업참여제한에 해당되더라도 사건 해당자의 단순 실수, 착오 등으로 인한것이 분명할 경우에 한해 경고 1회로 감경 가능
 - 주의/경고는 전문위원회 개최 없이 제재 가능

★ 상세 사항은 추후 배포할 '20년도 세칙 참조

5. 기타사항(담당자 안내-본부)

사업명		성명	직책	직통번호	메일 주소 (@semas.or.kr)
본부 (특성화지원실)	희망프로젝트 (문화관광형)	김민진	대리	042-363-7622	minjin1192
		윤현재	대리	042-363-7626	now91
		서민기	주임	042-363-7627	mingi
		서운	주임	042-363-7787	dnsml12
	특성화 첫걸음	윤이나	주임	042-363-7786	yyiinn5465
		이선숙	주임	042-363-7826	leesunsuk85

5. 기타사항(담당자 안내-지역본부)

사업명		성명	직책	직통번호	메일 주소 (@semas.or.kr)
지역 본부	서울강원지역본부			02-720-4722	
	경기인천지역본부	원용석	주임	031-204-7021	yongsukwon
	대전충청지역본부 (지역선도형/문화관광형)	김경오	대리	042-864-8195	blackclow
	대전충청지역본부 (첫걸음)	김경오	대리	042-864-8195	blackclow
	대구경북지역본부	남상원	과장	053-629-4637	namsang
	광주호남지역본부	문옥철	과장	062-369-8752	nimbletiger
	부울경지역본부	성지혜	대리	051-442-1661	jh8347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 원산지 표시는 83.2%로 양호하나, **가격표시(57.8%)**, 상품교환(63.2%), 환불(52.5%),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부족
- 2 세대가 젊어질수록 모르는 사람과 논쟁하는 것을 기피, 협상하고 따지는 것이 전통시장의 **人心**이나 **情**이 아닌 **바가지**로 인식
- 3 가격표시를 하더라도 **일부(대표) 품목만** 표시한다거나,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 입장**에서 표시하여 취지에 어긋나
- 4 시장별로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가격표시를 추진하고 있어, 보다 정비되고 통일된 시장 이미지 조성의 어려움
- 5 고정된 가격이 공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
- 6 가격 표시는 구매의사가 없는 고객의 구매 욕구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마케팅 방법

• 추진내용

가격표시제

- 전통시장 상품에 대한 고객신뢰 제고
-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

① 도입확산기('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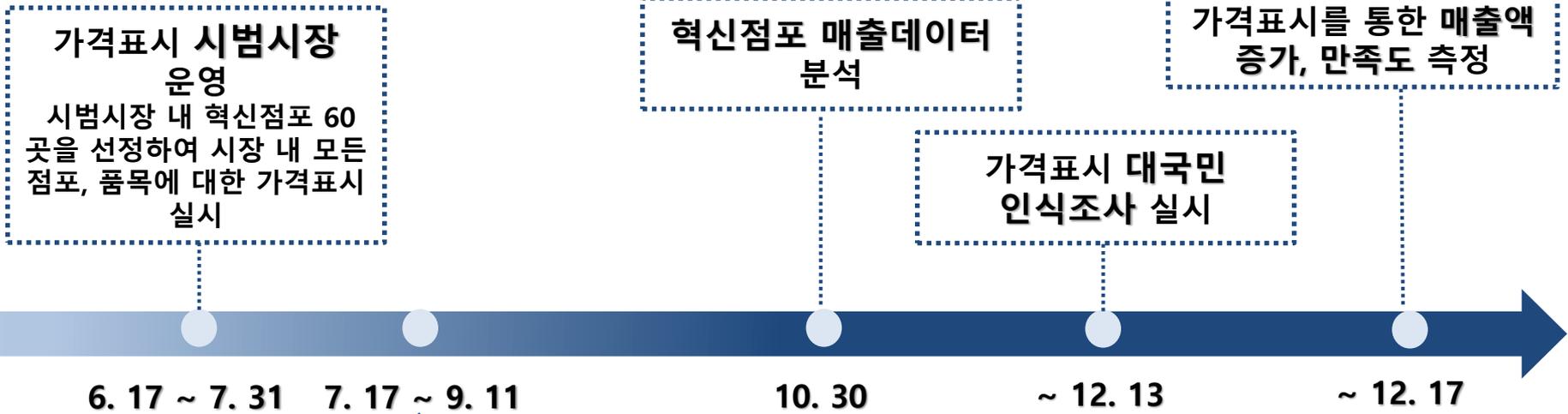
- 시범시장 운영
- 가격표시 집중시행기간 운영
- 우수시장 표창 및 홍보

② 정착기('20년~)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및 바우처(시장매니저)시장 대상 운영
- 성과관리(모니터링단, 간담회)
- 매뉴얼 배포

6. '20년도 가격표시제 활성화 추진방안

• '19년 가격표시제 추진경과



가격표시 집중시행기간 운영
시장별 점포별 특색에 맞는 가격표시 실시



매뉴얼, 리플렛 제작·배포



배너 설치



현수막 설치

• 성과점검 및 확산

성과조사

가격표시 시행 전후 시장 별 일평균 매출액 및 고객신뢰도 조사

우수사례 선정

가격표시 우수사례 15건 이내 선정, 성과평가 가점 부여
 - '전통시장 가격표시 우수사례 매거진(특성화시장 매거진 VOL3)' 제작, 배포

우수시장 선정

가격표시 이행률, 추진내역(사업단), 매출액 및 고객신뢰도, 현장평가를 통해 10곳 이내 선정

- '20년 특성화시장 성과발표회에서 표창
- 가격표시 우수시장 현판 제작, 배포

< 인증현판 예시 >



6. '19년도 가격표시제 활성화 우수사례

• 사례1 (경기 부천시 부천중동시장)

- ❖ 영업점포 103개 중 95개 점포 실시(92%)
- ❖ 가격 POP디자인을 만들어 상품정보에 통일성을 부여



➡ 고정형 POP 적용 전/ 후



6. '19년도 가격표시제 활성화 우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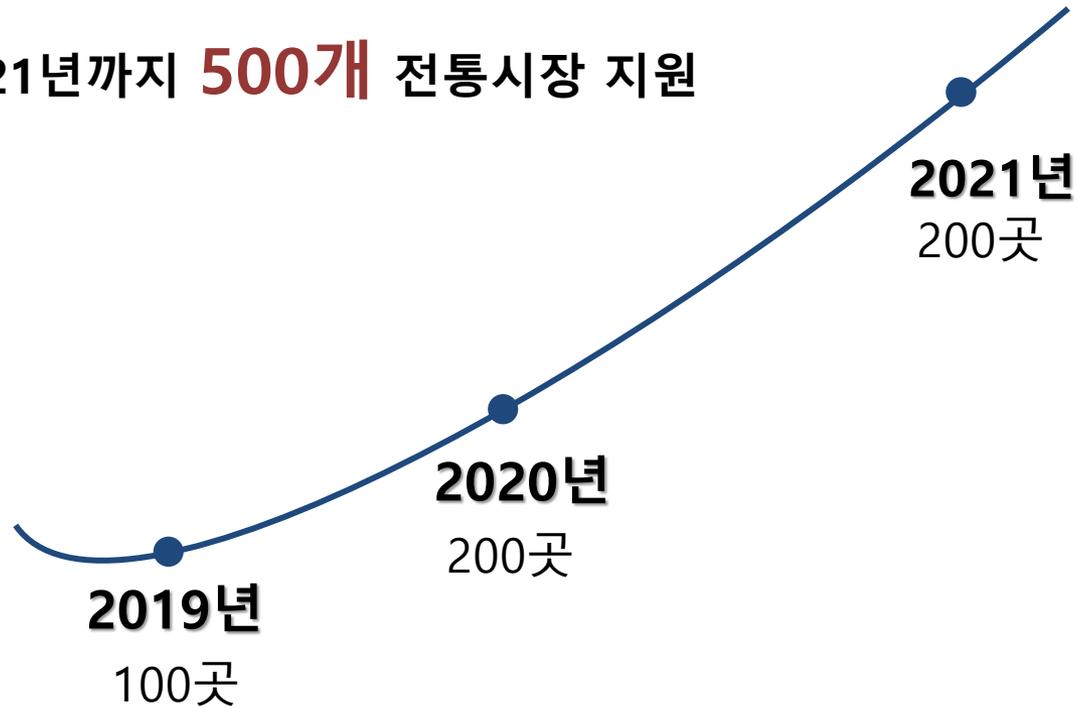
SMALL ENTERPRISE AND MARKET SERVICE

• 사례2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시장)

❖ 영업점포 60개 중 60개 점포 실시(100%)



'21년까지 **500개** 전통시장 지원



전통시장 고객신뢰 제고, 경쟁력 확보

• ('20년) 가격표시제 활성화사업 추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 **(사업기간)** 사업단장 주도, 점포별 1:1 지도 실시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사업비 중 일부를 가격표시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
 - 사업 종료 후에도 별도의 인력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가격표시 유지 기반 마련
- **(사업종료)**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사후관리 전담인력(1인), 상인기획단이 해당 시장 가격표시 활성화 지원
 - 공단(지역센터) 담당자의 정기 실태점검 및 상인기획단 대상 1:1 지도 실시

시장매니저

- 시장매니저 과업에 해당시장의 가격표시 활성화를 추가하여 **가격표시 전담인력**으로 활용

가격표시제 확산으로 전통시장의 고객편의를 위한 기반조성



신규고객 유입, **매출** 향상

7. 자주 묻는 질문

지자체

Q1. 시장별 사업예산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A1. 시장별 사업예산은 '20년도 사업신청시 제출한 신청서의 총점포수를 기준으로 시장별 규모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슬라이드 9번 내용 참조)

Q2. 지방비 납입이 늦을 경우, 국비 먼저 교부되나요?

A2. 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비가 납입되지 않았더라도 국비(50%) 먼저 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비도 분할하여 입금 및 교부가 가능하니, 광역·기초 지자체 중 확보된 곳이 있다면 일부라도 먼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회

Q1. 상인기획단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A1. 사업추진, 사후관리, 성과유지를 위해 사업관계자들과 상호 협력하여 사업종료 후에도 시장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Q2.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 중 개별점포지원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2. 특정 및 개별점포 지원은 불가능하며, 시장의 공동 인프라 조성 목적으로만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개별점포가 직접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개별점포 소화기, POP 등) 자부담을 포함하여 구입하여야 합니다.

Q3.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에서 개별점포 간판, 매대 등을 조성할 수 있나요?

A3.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은 일체의 기반설비(시설현대화) 추진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개별점포 간판, 매대, 조명 개선, 조형물 제작 등 시설현대화에 포함되는 일체의 사업은 추진할 수 없습니다.

기반설비 관련 사업은 추후 희망사업에서 시설현대화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며 첫걸음은 5대 핵심과제 개선과 관련된 사업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상인회

Q4. 사업단이 상인회,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나요?

A4. 아니요. 사업단은 사업주체(지방청, 공단, 지자체, 상인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장 환경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상인회나 지자체가 사업운영세칙에 반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단

Q1. 사업비 지급 시기가 궁금합니다.

A1. 프로젝트 계획 최종 승인 후 선금(70%)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중순 이후로 예상됩니다.
상세 절차는 사업단장 대상으로 추가 교육 예정입니다.

Q2. 사업단장 용역비율 80%, 100%의 기준과 해석이 궁금합니다.

A2. 100%의 경우에는 주5일 시장 현장에서 상주근무(9~18시)를 의미하며, 타사업 참여 및 외부 강의, 사업과 연계성이 없는 평가 등의 행위를 일체 금합니다.
80%의 경우에는 주4일 시장 현장에서 상주근무이고, 1일은 자율입니다.

Q3. 성과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3. **(희망사업)**은 정량(고객평가, 온누리상품권 증감, 상인만족도 증감, 상인기획단 운영 등), 정성(사업 내용에 대한 발표 및 평가), 가.감점(제재사항, 우수사례 선정 등)을 평가하며,
(첫걸음 기반조성)은 기초(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증감 여부 등), 고객평가(선정평가 시 진행한 암행 고객평가 재진행하여 개선정도 파악), 정성(사업내용에 대한 발표 및 평가), 가.감점(제재 사항 등)을 평가합니다.
단, 평가지표는 매년 조금씩 상이하여, 확정되는 대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사업단

Q4. 성과평가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A4. **(희망사업)** 사업단장 인센티브 지급과 차년도 사업비 차등 지급 등의 자료로 활용되며, **(첫걸음 기반조성)**은 차년도 희망사업(문화관광형) 연속지원의 평가자료 및 사업단장 인센티브 지급 자료로 활용됩니다.
평가관련 상세 사항은 추후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질의응답



감사합니다
